

안전확인대상제품(제3조제3항 및 제4항 관련)

1.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분류	품목
가. 전선 및 전원코드	대상 없음
나. 전기기기용 스위치	전기기기용 제어소자 비고) 교류전압을 사용하는 제품으로 한정하며, 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 및 방폭형인 것은 제외한다.
다. 전원용 커패시터 및 전원필터	대상 없음
라. 전기설비용 부속품 및 연결부품	대상 없음
마. 전기용품 보호용 부품	대상 없음
바. 절연변압기	1) 고주파웰더(고주파용접기) 2) 전기용접기 비고) 정격출력 5kVA 이하인 것만 해당되며, 기계·기구류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한다.
사. 전기기기	1) 과일 껍질깎이 2) 전기 용해기 3) 이·미용기기 4) 전기의자 및 전동침대 5) 컴프레서(compressor) 6) 전기온수매트 7) 구강청결기 8) 해충퇴치기 9) 전기집진기 10) 서비스기기 11) 전기에어커튼

- 12) 팬코일유닛(fan coil unit)
- 13) 폐열 회수 환기장치
- 14) 게임기구
- 15) 식기세척기 및 식기건조기
- 16) 전기훈증기
- 17) 수도 동결 방지기
- 18) 산소이온발생기
- 19) 전기정수기
- 20) 전기세척기
- 21) 전기헬스기구
- 22) 전기차 충전기(정격출력이 500 kVA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 23) 삭제 <2019. 10. 21.>
- 24) 가정용 전동채봉기
- 25) 사우나기기
- 26) 관상 및 애완용 전기기기
- 27) 기포발생기기
- 28)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공기청정기
- 29) 전기분무기
- 30) 물수건 마는 기기 및 포장기기
- 31)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주방용 전동기기
- 32) 삭제 <2023. 3. 20.>
- 33)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격 살충기
- 34) 자동판매기
- 35) 전기소독기
- 36) 채습기
- 37) 음식물처리기
- 38) 전기보온기 및 전기온장고(음식이나 그릇류 등을 보관하는 기능을 가진 것을 말한다)
- 39) 유체펌프(여과기능이 내장된 펌프를 포함하며, 사용 액체의 온도가 90℃ 이하인 것만 해당되며, 진공펌프, 오일펌프, 샌드펌프 및 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한다)
- 40) 전기가열기기

	41) 전기욕조 42) 그 밖에 1)부터 41)까지의 기기와 유사한 기기 비고) 정격입력이 10kW 이하인 것만 해당(전기차 충전기는 제외한다)하며, 방폭형인 것은 제외한다.
아. 전동공구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전동공구 비고) 정격입력이 1.5kW 이하인 것만 해당된다.
자. 오디오·비디오 응용기기	1) 텔레비전수상기 2) 디스크 플레이어 3) 오디오시스템 4) 삭제 <2018. 12. 31.> 5) 삭제 <2021. 5. 3.> 6) 삭제 <2021. 5. 3.> 7) 그 밖에 1)부터 3)까지의 기기와 유사한 기기 비고) 기계·기구류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한다.
차. 정보·통신·사무 기기	1) 모니터 2) 프린터(플로터 및 그래픽 전용인 것은 제외한다) 3) 프로젝터 4) 문서 세단기 5) 천공기 6) 삭제 <2018. 12. 31.> 7) 복사기(광원의 정격출력이 1.2kW 이하인 것을 말한다) 8) 무정전 전원장치(정격출력이 10kVA 이하인 것을 말한다) 9) 컴퓨터용 전원공급장치 10) 디지털TV(스마트 TV, IPTV 등을 말한다) 11) 코팅기 12) 노트북컴퓨터(태블릿 PC를 포함한다) 13) 전지(충전지만 해당한다) 14) 그 밖에 1)부터 13)까지의 기기와 유사한 기기 비고) 기계·기구류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한다.
카. 조명기기	1) 백열등기구

	2) 방전램프 3) 1)을 제외한 그 밖의 조명기구 4) 2)를 제외한 그 밖의 램프
타. 전기저장장치 구성품	1) 전력변환장치(정격출력이 2MVA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2) 리튬이차전지시스템(정격용량이 300kWh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2.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

분류	품목
가. 화학	1) 건전지(충전지는 제외한다) 2) 자동차용 브레이크액 3) 자동차용 타이어
나. 생활	1) 고령자용 보행보조차 2) 고령자용 보행차 3) 디지털 도어록 4) 롤러스포츠 보호장구 5) 스노보드 6) 스케이트보드 7) 전동보드 8) 스키용구 9) 이륜자전거 10) 헬스기구 11) 휴대용 레이저용품 12) 승차용 안전모(승차용 눈 보호구를 포함한다) 13) 운동용 안전모 14) 온열팩(주머니난로를 포함한다) 15) 수유팜드 16) 기름난로(연료소비량 600g/h 이하 제품으로 한정한다.) 17) 야외 운동기구 18) 가정용 미용기기
다. 기계금	1) 삭제 <2021. 5. 27.>

속	2) 휴대용 예초기의 날 및 보호덮개 3) 삭제 <2019. 2. 8.>
라. 섬유	1) 등산용 로프 2) 스포츠용 구명복
마. 건축	1) 미끄럼 방지 타일 2) 실내용 바닥재

◆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별표4] 안전확인대상제품		[별표4] 안전확인대상제품	
사. 전 기기	22) 전기차 충전기(정격 출력이 200 kVA 이 하인 것만 해당한다)	사. 전 기기	22) 전기차 충전기(정격 출력이 500 kVA 이 하인 것만 해당한다)